

## 자동차관리사업체(매매업) 행정처분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

자동차관리법 제56조(사업의 개선명령)를 위반한 다음 업체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66조제1항제5호 및 자동차관리법제21조제2항등의규정에의한행정처분의 기준과절차에관한규칙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을 하고, 행정처분 통지서를 송부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
2010. 02. 11.

영 동 군 수



### 1. 대상업체

업 체 명	대표자	사업장 소재지	위반내용	처분내용	비고
유한회사 하나	최효석	충북 영동군 영동읍 계산리 291번지	사업의 개선명령(등록차량의 사업장내 보관) 불이행	사업정지 1월 (2010.02.11~ 2010.03.10)	1차

2. 공고기간 : 2010. 02. 11 ~ 2010. 03. 10

3. 처분근거 : 자동차관리법 제66조제1항제5호, 자동차관리법제21조제2항등의규정에 의한행정처분의기준과절차에관한규칙 제5조제1항

4. 본 행정처분에 불복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충청북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,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5.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영동군청 건설교통과(043-740-3513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